

	<h2 style="margin: 0;">학생활동 준칙</h2>		규정번호	3-4-11
			제정일자	1990.03.02
			개정일자	2012.04.30
			개정번호	Ver.6
			총페이지	4

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생들은 “성실, 근검, 박애”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망과 신념을 지닌 인간상의 구현을 위하여 학칙을 준수하여 심오하고 고매한 인격도야를 기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자격을 연마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학생준수 규칙을 둔다.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본 준칙은 학칙에서 위임한 본 대학 학생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 준칙은 본 대학 학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.

### 제 2 장 학생동아리의 구성·등록 및 운영

**제3조(구성)** 학생동아리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1. 구성

가. 학생동아리의 구성은 지도교수 1명을 선정하여 5개학과 이상으로 구성되어 총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나. 학생은 학생동아리에 2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.

2. 등록

가. 각 동아리는 매 학기 초에 교학처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지원팀에서 공고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구비서류(학생서비스센터 비치)를 작성하여 교학처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한다.

나. 위 신청 사항은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다. 다음의 해당 동아리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.

- 1)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단체
- 2) 학칙에 위배되는 단체
- 3)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단체
- 4) 기존 단체와 유사한 단체
- 5) 운영상 재정능력이 없는 단체
- 6) 정치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
- 7) 기타 학생활동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

3. 운영

- 가. 동아리활동기간은 1학기 초부터 다음 2학기말까지 한다. 다만, 학생회 관리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래 등록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- 나. 임원개선 및 회칙변경의 경우 7일 이내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다. 등록신청기간 중 등록을 위한 집회나 공고 이외의 활동은 일체 금한다.
- 라. 등록된 동아리 중 신규동아리는 당해 학년도에 총학생회에서 예산을 보조받을 수 없다.

**제 3 장 집회 · 게시 · 간행물 · 인쇄물 배포**

**제4조**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집회를 포함한 학생활동은 교학처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지원팀에서 비치된 소정양식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총학생회 및 장소허가 담당자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 학생부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5조(집회 및 행사의 승인사항)**

구 분	제출기일	승인사항
동아리의 일반 집회	5 일전	교학처 학생부처장
교내 집회 및 행사	7 일전	교학처 학생부처장
교외 집회 및 행사	10 일전	총 장
타 대학과 연합 행사	1 개월전	교육과학기술부장관

**제6조** 교내에서 학생이 광고, 인쇄물 및 현수막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지정게시판 이용)

**제7조** 시험기간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일까지는 여하한 집회의 행사를 할 수 없다.

**제 4 장 운동경기 참가**

**제8조** ① 학생이 대외운동경기에 참가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지도교수를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
② 전항의 허가 없이는 대외 단체운동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.

③ 정기 시험기간 중에는 제1항의 허가외 교학처 학생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9조** 학생의 대외운동경기에 단체 응원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 5 장 학생생활 일반 준수사항**

**제10조(신상변동)** 입학때 제출한 학생신상카드 기재사항에 변동(본적 현주소 변경 등)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교학처 교육운영팀 및 교학처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지원팀에 신고 하여야한다.

**제11조(외부활동)** 학생은 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직업적 유흥단 등에서 일할 수 없으며 또한 학교수업시간과 중첩되어 정상적인 학생생활을 할 수 없는 부직은 가질 수 없다.

**제12조** 교내활동 중 도서관을 제외한 기타 장소에서 23:00분 이후에는 일체의 학교 출입 및 야간활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야간잔류신청서를 학교 홈페이지 e-서비스 시설물 신청서에서 입력 저장하고 출력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3일전에 학생서비스센터 학생지원팀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13조(음주 및 취사금지)** 교내에서는 일체의 음주 또는 취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 단, 학부(과)장 또는 지도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 한 후 음주 등을 허락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준칙은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준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준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준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준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학생활동 준칙은 이 준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준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준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